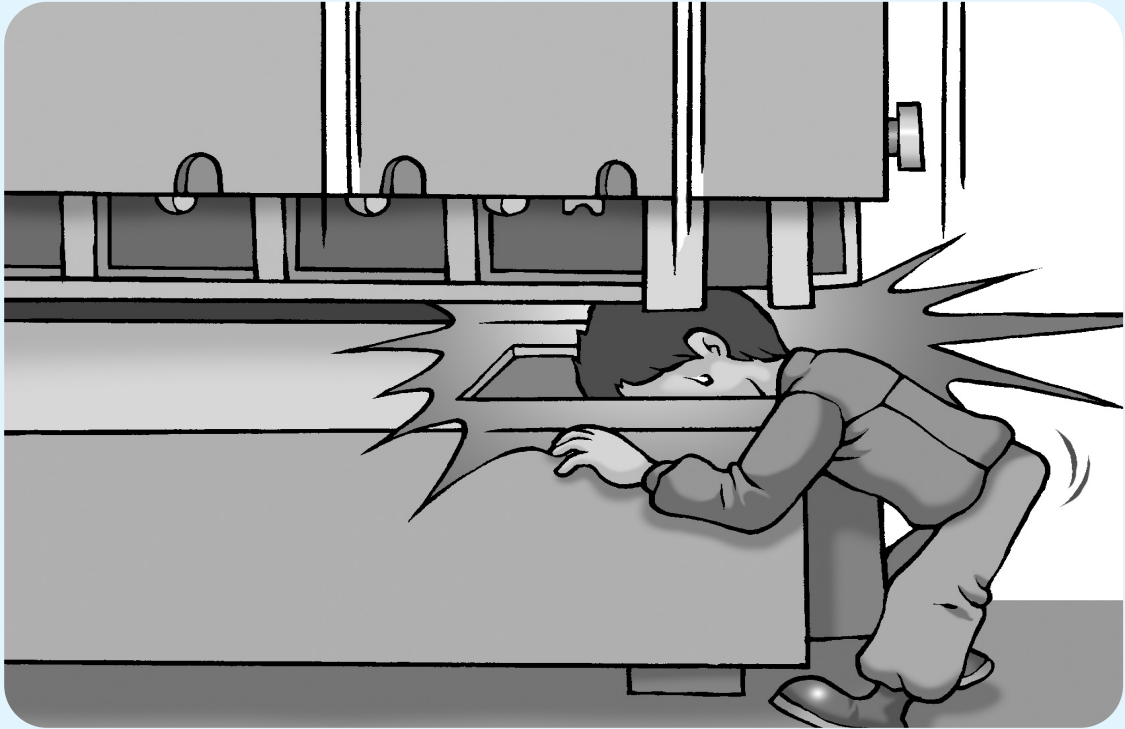


프레스가동중수정작업하다금형에 협착



1. 재해발생 경위

2005년 8월 ○일 09:10분경 인천시 소재 ○○자동차공장 프레스(6대)라인에서 자동차 우측판넬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판 송급 및 취출장치를 자동화하여 시험운전 하던 중 철판이 프레스 금형의 정위치에 안착되지 않자, 프레스 가동상태에서 철판 수정작업을 하다가 프레스 상하금형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방호장치 기능 임의해제
- 나. 프레스 작동 중 정비 작업
- 다. 안전블록 미설치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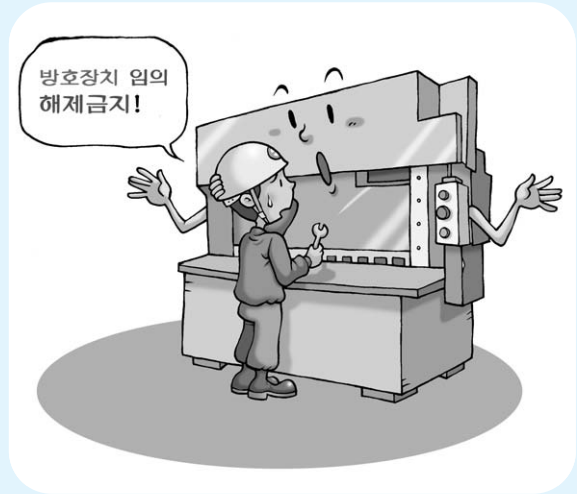
- 가. 방호장치 임의 해제금지

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

방호장치의 수리·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레스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.

나.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

프레스의 정비, 청소, 급유, 검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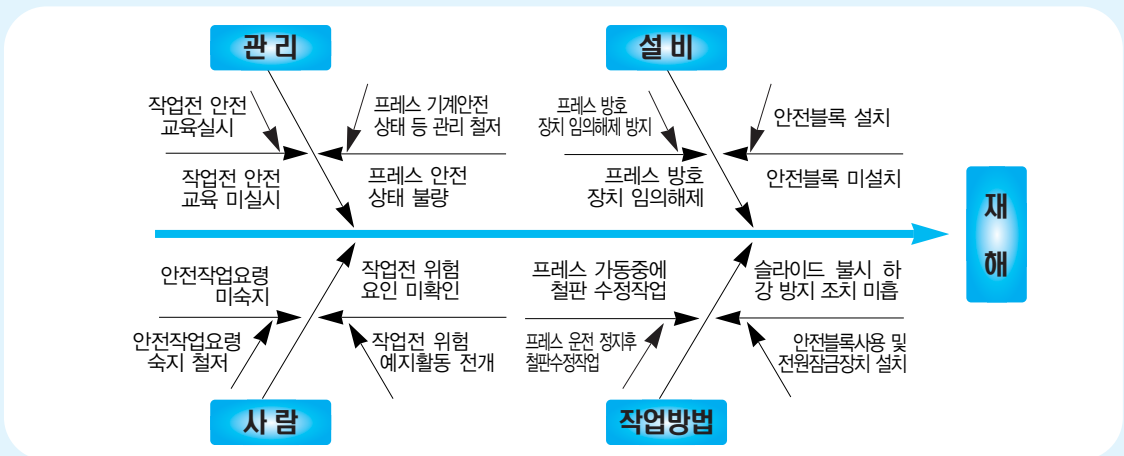
다. 보수 작업시 안전블록 설치 사용

보수, 금형조정 등의 작업시에 슬라이드 불시하강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블록을 사용하고, 타 작업자의 오조작 방지를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한후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“수리중”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.

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

비오는 날 핸드라인더 작업중 감전된



1. 재해발생 경위

2005년 8월 ○일 10:40분경 충남 소재 ○○특장 옥외작업장에서 비가 오는 날 특장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비에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전 핸드그라인더로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연 마지막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휴대용 전동기계·기구 외함접지 미실시
- 나. 누전차단기 미설치
- 다.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미사용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휴대용 전동기계·기구 접지 실시

휴대용 연삭기 등의 전동기계·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감전방지를 위해 해당 기계·기구의 외함에 접

재해사례연구 감전사고

지를 실시하여야 함.

나.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

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거나 습윤한 장소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·기구의 전원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(정격감도전류 : 30mA, 동작시간 : 0.03초)를 설치토록 하여야 함.

다.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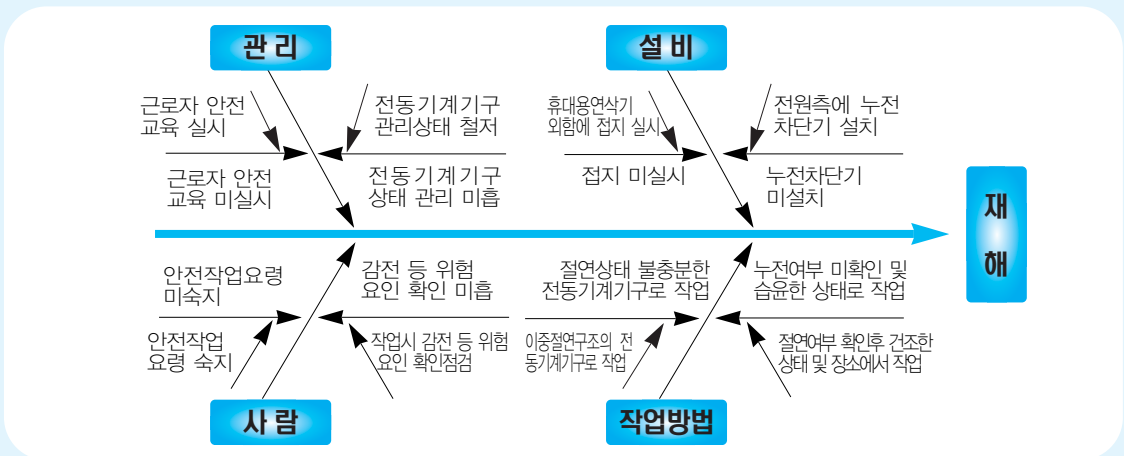
휴대용 연삭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·기구 는 기능절연과 보호절연이 되어있는 이중절연구 조의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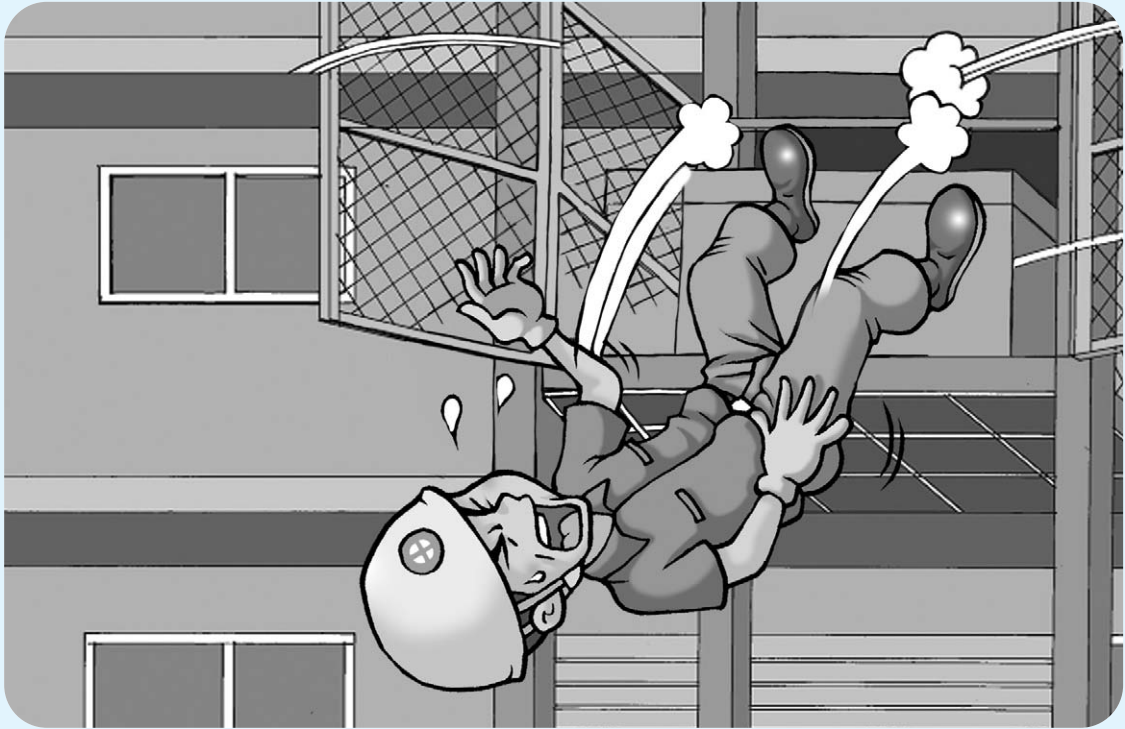
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

리프트로 배전반 케이스 운반 중 출입문이 열려 추



1. 재해발생 경위

2005년 7월 ○일 09:10분경 경기도 소재 ○○엔지니어링 전기배전반 제작업체 옥외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로 배전반 케이스(80kg) 운반작업을 하던 중 3층으로 운반되어진 배전반 케이스를 건물 내부로 밀어넣기 위해 리프트에 탑승하여 반대 출입문에 기대어 밀던 중 여단이문 빗장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아 문이 열리면서 6.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출입문 잠금장치 불완전 체결
- 나. 작업방법 불량
- 다. 탑승금지 표지 미부착 및 안전모 미착용

3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출입문 잠금장치 완전 체결

재해사례연구 추락사고

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빗장을 완전히 체결하고 출입문 내부 상하에 설치되어 있는 고리형 도어록을 완전히 체결한 후 리프트를 작동시켜야 함.



나. 작업방법 개선

리프트 운반구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운반구에 올라가지 않고 건물내부에서 끌어 당기는 작업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
다. 탑승금지 표지 부착 및 안전모 착용

근로자가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탑승금지 표지부착 및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
4. 범위반사항

-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-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

5. 재해 요인도

